

웅지세무대학교	학부(과)배정규정 시행세칙	문서번호	4-1-09(D)-1
		제정일자	16.06.30
		최근개정	19.04.03
		주관부서	교무처
		홈페이지공개	공 개

웅지세무대학교 교무처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부배정규정」 제4조(배정기준 및 절차) 및 제5조(배정인원)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학정원 구분) 이 지침을 적용한 학부배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입학정원내 입학자와 입학정원외 입학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학부배정 절차를 진행한다.

제3조(학부배정 신청) ① 회계세무정보학부에 배정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교학처에 학부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경영세무정보학부에 배정한다.

제4조(학부배정 기준) ① [별표 1]의 공인영어점수 이상을 취득하여 회계세무정보학부 배정을 신청한 자는 회계세무정보학부에 배정한다.

② 제1항의 학부배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경영세무정보학부에 배정한다.

제5조(학부배정 절차) 학부배정 신청방법, 학부배정 신청기간 및 학부배정 세부절차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학기 중 휴학자 특례) 총 수업일수 4분의 3 경과 후 휴학한 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세무정보학부 배정신청서를 휴학원서와 같이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학부별 학생정원) ① 회계세무정보학부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배정된 학생수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1.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배정된 학생

2. 회계세무계열을 모집단위로 입학한 편입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배정을 실시하여 회계세무정보학부에 배정된 학생 수

② 입학정원에서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회계세무정보학부 학생정원을 제외한 수를 경영세무정보학부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8조(학부배정 전 제적자 특례) 1학년 1학기 총 수업일수 4분의 3 경과 후 학부배정 전 자퇴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는 경우 해당학생의 소속 학부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2015학년도 이전 입학한 회계세무계열 재학생의 학부배정) 2015학년도 이전 입학한 회계세무계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학생의 선택에 의하여 학부를 결정하여 배정하고 이는 제7조의 학부별 학생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 칙 <1판-제정 2016.06.30.> <시행 2017.03.01.>

이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판-개정 2019.04.03.> <시행 2019.03.01.>

이 시행세칙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회계세무정보학부 배정 기준 공인영어점수

TOEIC	TEPS	TOEFL (iBT)	G-TELP (Level 2)
550	241	63	45